

1 지원규모

- (디지털첫걸음) 10곳 내외
- (디지털고도화) 18곳 내외
- * 특성화시장육성 사업(문화관광형, 디지털전통시장, 첫걸음기반조성시장) 동시 신청 불가(택1 必)

2 사업기간

- (디지털첫걸음) '25. 1월 ~ 12월(최대 1년)
- (디지털고도화) '25. 1월 ~ '26. 12월(최대 2년)
- * 단, 디지털첫걸음 유형의 경우, 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디지털고도화로 연속지원 가능

3 지원대상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전통 시장·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

※ 지원 제외

- 접수 마감일('25.2.14)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'사업 참여제한' 기간 중에 있는 경우
- 접수 마감일('25.2.14) 기준 최근 1년내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
- 접수 마감일('25.2.14) 기준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지원 중인 시장
- 상권활성화사업(舊 상권르네상스) 지원 중인 시장('25년 지원예정 포함)

4 신청자격

- (공통) 접수 마감일 기준, 다음의 기초역량 3대 조건을 충족하는 곳
 - ① 상인회 가입률 80% 이상
 -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% 이상
 - ③ (지류형)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% 또는 유효 가맹률 60% 이상
(카드형)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0% 또는 유효 가맹률 60% 이상
- *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율 산출시 제외 [→붙임7 증빙必]
- ** 온누리상품권 지류형, 카드형 두 개 조건을 충족해야 함

- **(디지털 고도화)** 온라인 입점점포 비율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% 이상*인 전통시장·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만 신청 가능
 - * 【붙임 6】 온라인 플랫폼 입점 점포 명부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며 선정 후 서류상의 허위사실이 적발되는 경우, 사업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**(공통)** 시장경영패키지지원(인력지원)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시장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나, 동일 인력에 대한 인건비 중복 집행 불가
 - * (예시) 시장경영패키지지원으로 A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
⇒ A인력(동일인)에 대해 '디지털 전통시장' 예산을 활용하여 인건비 중복 집행 불가

※신청자격 참고사항

- '24년도에 2년차인 문화관광형시장('22년 선정)은 공고일('25.1.16) 기준 지원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
 - * 단, 기존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진척률 등을 감안할 때 협약기한 내 사업완료 및 목표달성이 가능하고, 연속사업이 차별성, 발전가능성, 기대 효과 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선정 예정

5 지원내용

- 디지털 수준에 따라 시장을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, 전통시장이 원활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 온라인 진출 지원

유형	지원부문	사업 내용
디지털 첫걸음	컨설팅·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내·외부 환경 분석, 디지털 역량(상인 역량, 인프라 현황 등) 수준진단 ■ 시장, 점포별 상품 발굴(또는 리뉴얼) 컨설팅 ■ 온라인 진출 유형(근거리 배송, 전국 택배형)별 전략 수립 컨설팅 ■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(안) 수립 컨설팅 ■ 시장별 디지털 전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디지털 교육
	온라인 입점 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온라인 플랫폼 입점하기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등 지원 ■ 온라인 플랫폼 입점 前 사전 준비사항, 입점 방법 등 코칭
디지털 고도화	인적·물적 인프라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인적기반) 사업 운영인력(상근) 및 배송 업무 보조인력(단기) 지원, 보조 운영조직(협동조합) 설립 지원 ■ (물적기반) 상품 집하, 픽업을 위한 시장 내 공동배송센터 구축(장소 임차) 및 배송 장비, 시설, 상품 포장 관련 시설 임차
	온라인 입점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배송 유형(①근거리 배송, ②전국 택배형)에 적합한 플랫폼 입점 수수료 등 제반 비용 지원
	홍보·마케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온라인 진출 성과창출을 위한 홍보·마케팅 ■ 온라인 기획전(무료배송, 할인쿠폰 등) 등 판촉 프로모션 개최
	상품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온라인 진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 및 브랜드, 비즈니스모델 등 개발

* 본 사업으로 시장 자체 플랫폼 신규 개발, 동행세일 등의 오프라인 행사는 지원 불가

6 지원조건

- 디지털 첫걸음은 최대 1년간 1억원 한도이며, 디지털 고도화는 최대 2년간 4억원 한도 이내 지원
- 시장규모(사업자등록점포수) 및 온라인 입점 점포수를 고려하여 예산 차등 배정

* 예산 규모는 '25년 예산 확정에 따라 변동가능

유형	지원기간	지원조건
디지털 첫걸음	최대 1년	최대 1억원 이내(국비 50%, 지방비 50%) → (지원 종료 후) 종료. 단, 일부시장은 성과평가를 통해 디지털고도화 유형 연속 지원(첫걸음 1년→고도화 2년) * 단, 사업 운영은 전문기관을 통해 추진 예정
디지털 고도화	최대 2년	최대 4억원 이내(국비 50%, 지방비 50%) → (1년차 지원 종료 후) 성과평가(온라인 입점점포 수, 온라인 매출 등)를 통해 2년차 지원규모 확정('25.12) → (2년차 지원 종료 후) 지원 종료. 디지털전통시장 사업(디지털고도화)은 1회만 수혜 가능하므로, 중복 불가

- 시장 특성에 따라 ①온라인 장보기형(근린상권 장보기 서비스), ②전국 배송형으로 구분하나, 환경에 따라 복합 지원 가능
- 디지털 고도화 유형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
 - 사업계획서 내 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 계획 제출 포함(단, 접수 마감일 기준 협동조합 미설립 시장은 협동조합 설립 협약서 추가 제출)
 - * [붙임2] 사업계획서 상 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계획 작성必
 - 1년차 사업 종료 시까지 사업 보조 운영조직인 협동조합을 미설립하는 경우, 온라인 입점 추진 미흡 시 페널티 부여 예정

7 신청·선정 절차

- (서류제출)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·사업계획서 원본 및 기타 증빙 서류를 기초지자체에 제출

- (신청·접수)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(온라인 신청기간 '25년 1월 16일~2월 14일)

* [붙임 11] 「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·접수·승인방법」 매뉴얼 참고

온라인 신청·접수절차

①기초지자체 승인권자(신청승인)→②광역시자체 담당자(검토승인)→③공단본부(접수)

- 1) (담당자 확인) 기초·광역시자체, 지방청 담당자는 소상공인24에 회원가입 후 공무원 인증

* 단, 담당자 변경 시 시스템을 통해 자체 인수인계 처리

- 2) (사업신청)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소상공인24 지원사업 신청-공고조회 클릭하여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의 '공고명'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

-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·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 후 첨부 파일에 업로드

* 온라인신청 첨부파일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

- 3) (사업검토)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검토(필요시 보완요청 가능) 후 승인

* 공고 기한 내 공단 담당자에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
(단, 신청사이트 오류로,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접수)

- 4) (공단접수) 공단본부의 검토 후 최종 제출된 시장별 신청서 최종 접수완료(필요시 보완요청 가능)

- (선정절차) 전통시장(서류제출)→시·군·구(신청)→공단본부(검토·접수)→공단본부(기초평가) 및 평가위원단(현장평가·서류(발표)평가)→중기부(선정심의)

* 공단이 요구하는 평가관련 자료 제출 지연 시 발표평가 제외 가능

- (결과발표) 최종 지원대상 공지('25. 3월말 예정)

8 우대 및 감점 조건(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선정)

- 공통 우대 및 감점 사항 : 공고문 참조
-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우대사항
 - 1) 사업자등록(국세청)을 한 자의 비율이 높은 곳(영업 점포 수 대비)
 - 2) 디지털 전통시장 보조 운영조직인 '협동조합' 설립이 완료된 곳
 - *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 등기 완료한 곳
 - 3) 공동배송센터(기 구축한 공동배송센터 포함)를 구축하여 인근시장과 공동 이용하기를 희망한 곳
-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감점 사항
 - 1)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
 - 2) 특성화사업 기지원 시장의 경우, 최근 3년간('22년~'24년) 지침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지원시장(상인회 등)

9 유의사항

- 지원시장 선정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중기부·지방중기청·공단본부·공단지역본부의 사업계획 수정·보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원시장 선정 취소 및 사업비를 축소할 수 있음
- 사업관계자간 갈등으로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 되지 않을 경우 지원시장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공고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운영 세칙에 근거하여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